

연합회 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PLATFORM

Opinion on the
Architect Union System
by Yoo, Kyung Chul

다수회원이 연합회제도를 갈망해 온 것은 수년에 걸친 일이다. 각기 회원은 소속한 지부활동의 활성화 회부와 비례하여 연합회 제도 실시 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를 위요한 정계에서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거론이 이러한 내적 분위기 성숙에 한 몫 더 거들었다고 볼 수 있다. 84년 봄, 김지태 전회장과 오용석 현 회장 및 필자를 비롯한 사무처장 등 일행이 장래의 연합회제도 실시에 대비, 사전 조사 준비차 일본을 다녀왔고 또한 계속하여 회장단과 국제 및 제도위원장 등이 미국과 동남아 제국의 건축사협회제도를 시찰하고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1984년 제19차 정기총회에서 현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 협회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협회의 기구조직의 확대개편 작업으로 85년초 연합회연구위원회를 제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일련의 이와 같은 움직임의 산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협회 제도는 정부 체제의 흐름과 필연적으로 궤(軌)를 같이하는 특별법인체로 한계지워져 있다고 여긴다.

86년에는 임시 대의원총회시 결의에 의하여 연합회제도 실시를 전제로 한 독립예산 제도의 실시방안을 연구 보고하도록 위임 받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모양을 짠 다음에 예산제도를 마추는 것이 선후의 합리를 갖추는 일이겠으나 연합회제도 실시와 불가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시기나 실시지역이 잠정적으로나마도 정해지지 아니한 것이 연구의 순서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변수 가운데에는 지부활동 활성화에 대한 회원들의 요망에 조기 부응 하려는, 회원을 위한 협회의 충정이 담겨있다는 사실에도 아울러 이해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

독립예산제도가 우리에게 전혀 생경한 것은 아니다. 이미 65년부터 75년까지 10여년의 충분한 경험을 거친 바 있다. 따라서 독립

예산제도를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잇점·불리점 등 제문제를 경험에 의거, 상정(想定)할 수 있다.

우선 추정할 수 있는 유익점으로는

- 시도지부 고유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실시가 가능하여 지부활성을 촉진한다.
- 지부를 소속회원이 손수 조성한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예산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 회원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회원 복지가 증진되며 더불어 비리 추방이라는 승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회원의 현저한 권익신장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동시에 숙고되어야 할 사항이다.

- 각 지부별로 엄청난 예산표출이 예견된다.
- 지역별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유발될 염려가 과거에도 있었다.
- 이 외에도 시도지부 회원의 실적회비 징수를 조정, 본부 예산을 조성할 재원으로서의 정회원 회비의 적정선 책정, ● 취약지부에 대한 자립책 강구, 시도 지부에 분산되어 있는 협회재산의 분할관리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어떤 제도를 막론하고 100% 좋다, 또는 아주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일진대 어느 제도든지 장단점을 수반하게 되리라 믿어지며 다만 이를 어떻게 보완 하느냐가 문제일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제하에 독립예산제만이라도 87년도 실시를 목표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 회원의 의견을 더욱 폭 넓고 심도깊게 수렴하여 연구에 성의를 다하고자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제 변화에 대한 청사진은 예측하기 어려움을 상기할 때 이를 여하히 극복하고 무리없이 조화시켜 연합회제도라는 대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끌어낼지 미지수이다. 다만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증진 한다는 연구의 원칙에 전념하고 이를 끊임없이 보완 수정하여 만족할만한 해답을 얻어내야 한다는 소명감과 의욕을 높일 따름이다.

유경철/
본협 연합회연구위원회 위원장